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3.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7. 29. 김용태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5. 7. 30.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5. 9. 23.)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6. 2. 26.)

상정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6. 3. 12.)

상정 · 제안설명 · 축조심사 · 의결(수정가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6. 3. 24.)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축조심사 · 찬반토론 ·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김용태의원)

현행법은 베트남어 · 태국어 · 미얀마어 · 몽골어 · 포르투갈어 등 53

개 특수외국어를 배우려는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특수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최근 다양한 언어와 문화적 배경으로 특수외국어를 사용하는 이주배경학생이 증가하면서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맞춤형 학습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수외국어에 대한 전문지식과 구사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이 교육 현장에 배치되어 통역을 지원하는 등 다국어 학습 환경 조성 및 이중언어 인재 양성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또한, 특수외국어 교육의 현장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이에 특수외국어 교육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인력 활용 대책을 추진하고, 이주배경학생의 원활한 교육을 위한 특수외국어 통역 지원 등을 통해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최선영)

개정안에 따른 경우, (안 제2조) 특수외국어 교원의 범위에 고등교육 담당 교원뿐만 아니라 초·중등교육 담당 교원도 포함되어, 특수외국어 교육이 특수지역의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인력 양

성 중심의 고등교육기관 활용에서 특수외국어를 사용하는 초·중등학교 학생의 지속적인 언어 사용, 특수외국어 사용 국가에 대한 이해 등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안 제3조 및 제5조) 국가가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의 체계적 활용을 지원하여, 이주배경학생등의 수요에 대응한 전문인력의 체계적이고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며, (안 제5조 및 제6조)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절차에 교육감을 포함하고 기본계획에 초·중등학교 학생 대상 특수외국어 교육과정의 활성화 및 지원 등을 포함함으로써, 각 지역 초·중등학교의 특수외국어 교육 현황을 반영한 체계적 지원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은 (안 제9조제1항) 전문교육기관의 업무로 (제5호) 초·중등학교의 학생의 특수외국어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지원과 (제6호)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통역 등의 지원을 추가하고 있는데, 초·중등학교의 학생의 교육과정 개발은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업무이므로 전문교육기관의 업무로 규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교육과정 개발 지원과 운영 지원은 현행법 ‘특수외국어 교육과정 운영 지원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이행 가능하므로, 안 제9조제1항제5호는 삭제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은 (안 제9조의2) 초·중등학교 학생의 특수외국어 교육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특수외국어 교육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교육센터에 대한 특수외국어 전문인력 배치,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센터의 지원 목적 및 대상에 부합하도록 설치주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고민정)

현행 「초·중등교육법」을 인용하여 특수외국어 통역 등 교육 지원 대상 학생을 규정하고, 특수외국어 교육센터의 설치 목적 및 대상에 부합하도록 설치주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으로 변경하며,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문구를 보완하여 수정가결함.

6. 찬반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약칭과 관련한 경미한 자구 수정이 있었음.

※ 심사보고서 불임서류

1.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3.

제 안 자 : 교육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현행 「초·중등교육법」을 인용하여 특수외국어 통역 등 교육 지원 대상 학생을 규정하고(안 제9조제1항제5호), 특수외국어 교육센터의 설치 목적 및 대상에 부합하도록 설치주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으로 변경하며(안 제9조의2제1항),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문구를 수정함.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4호 중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19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으로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특수외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학교에서”를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로 한다.

안 제5조제2항제7호 중 “「초·중등교육법」에”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로 한다.

안 제6조제2항 중 “시행계획”을 “제1항의 시행계획”으로 한다.

안 제9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중전의 제6호) 중 “이주배경학생(「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학생이거나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 겪는 외국인 학생을 말한다)의”를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다문화학생등의”로 한다.

안 제9조의2제1항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을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제2조(정의) ----- ----- -----.
1. ~ 3.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1. ~ 3. (개정안과 같음)
4.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u>학교(이하 “학교”라 한다)</u> 중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학교를 말한다.		4. ----- ----- ----- ----- <u>학</u> <u>교</u> ----- ----- ----- ----- -----.
5. “특수외국어 교원”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으로서 <u>학교에서</u> 특수외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	5. ----- -----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또는 「고등교육법」----- -----	5. ----- -----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으로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u>학교에서</u> 특수외국어

한다.	----- ----- --.	<u>교육을 담당하는 사</u> <u>람</u> ----- ----- ----- <u>--같은 법 제2조에</u> <u>따른 학교에서</u> ----- ----- -----.
제5조(특수외국어 교 육 진흥 기본계획) ① 교육부장관은 특수외 국어 교육 진흥을 위 하여 관계 <u>중앙행정</u> <u>기관의 장과</u> 협의하 여 5년마다 특수외국 어 교육 진흥 기본계 획(이하 “기본계획”이 라 한다)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제5조(특수외국어 교 육 진흥 기본계획) ① ----- ----- ----- <u>중앙행정</u> <u>기관의 장 및 특별시</u> <u>· 광역시 · 특별자치</u> <u>시 · 도 · 특별자치도</u> <u>의 교육감(이하 “교육</u> <u>감”이라 한다)</u> ----- ----- ----- ----- -----.	제5조(특수외국어 교 육 진흥 기본계획)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	② ----- ----- -----.

1. ~ 3. (생략) 4. 특수외국어 전문 인력의 <u>양성</u>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6. (생략) <u><신설></u>	1. ~ 3. (현행과 같음) 4. ----- -----<u>양성·활용</u>----- 5.6. (현행과 같음) 7. 「<u>초·중등교육법</u>」에 따른 <u>학</u> <u>교의 학생(이하</u> <u>“학생”이라 한다)</u> <u>을 대상으로 하</u> <u>는 특수외국어</u> <u>교육과정의 활성</u> <u>화 및 지원에 관</u> <u>한 사항</u>	1. ~ 6. (개정안과 같음) 7. 「<u>초·중등교육법</u>」 제2조에----- ----- ----- ----- ----- -----
7. (생략) ③ (생략) 제6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 ① <u>교육부장관은</u> 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기초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6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 ① <u>교육부장관 및 교육</u> <u>감</u>----- ----- ----- ----- -----	8. (개정안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제6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 ① (개정안과 같음)

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기본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9조(전문교육기관의 업무) ① 전문교육기관은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4. (생 략)

<신 설>

<신 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전문교육기관의 업무) ① -----

-----.

1. ~ 4. (현행과 같음)

5. 학생의 특수외국어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지원

6. 이주배경학생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

② -----
----제1항의 시행 계획-----

-----.

③ (개정안과 같음)

제9조(전문교육기관의 업무) ① -----

-----.

1. ~ 4. (개정안과 같음)

<삭 제>

5.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2 제1항에 따른 다문화학생등의---

	<u>화가족의 학생이</u>	-----
	<u>거나 그 밖에 국</u>	-----
	<u>내로 이주하여</u>	-----
	<u>사회 적응 및 학</u>	-----
	<u>업 수행에 어려</u>	
	<u>움 겪는 외국인</u>	
	<u>학생을 말한다)</u>	
	<u>의 원활한 교육</u>	
	<u>을 위한 특수외</u>	
	<u>국어 통역 등 대</u>	
	<u>통령령으로 정하</u>	
	<u>는 지원</u>	
5. (생 략)	7. (현행 제5호와	6. (개정안 제7호와
	같음)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9조의2(특수외국어	제9조의2(특수외국어
	<u>교육센터의 설치·</u>	<u>교육센터의 설치·</u>
	<u>운영 등) ① 국가</u>	<u>운영 등) ① 교육</u>
	<u>및 지방자치단체는</u>	<u>부장관 및 교육감</u>
	<u>학생의 특수외국어</u>	<u>은</u> -----
	<u>교육을 전문적·체</u>	-----
	<u>계적으로 지원하기</u>	-----
	<u>위하여 「초·중등</u>	-----
	<u>교육법」 제2조에</u>	-----
	<u>따른 학교 및 교육</u>	-----
	<u>기관 등에 특수외</u>	-----

국어 교육센터(이하
이 조에서 “교육센
터”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은 교육
부장관 및 전문교
육기관과 협력하여
교육센터에 특수외
국어 교육에 전문
성을 갖추고 지도
· 운영을 전담할
수 있는 특수외국
어 전문인력을 두
어야 한다.

② ~ ④ (개정안과
같음)

③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는 교육센터
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
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교육센
터의 설치·운영,
특수외국어 전문인
력의 배치·운용,
행정적·재정적 지

	<u>원에 필요한 사항</u> <u>은 대통령령으로</u> <u>정한다.</u>	
--	--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고등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으로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특수외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으로, “학교에서”를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양성”을 “양성·활용”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양성”을 “양성·활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외국어 교육과정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제1항 중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학교”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다.

제9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다문화학생등의 원활한 교육을 위한 특수외국어 통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특수외국어 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생의 특수외국어 교육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교육기관 등에 특수외국어 교육센터(이하 이 조에서 “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육부장관 및 전문교육기관과 협력하여 교육센터에 특수외국어 교육에 전문성을 갖추고 지도·운영을 전담할 수 있는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교육센터의 설치·운영,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의 배치·운용,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u>학교</u> (이하 “ <u>학교</u> ”라 한다) 중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학교를 말한다. 5. “특수외국어 교원”은 「 <u>고등교육법</u> 」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으로서 <u>학교에서</u> 특수외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4. ----- ----- ----- <u>학교</u> ----- ----- -----. 5. ----- 「 <u>초·중등교육법</u> 」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으로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u>학교에서</u> 특수외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또는 「 <u>고등교육법</u> 」----- ----- <u>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u> ----- -----.
제3조(국가의 책무) ① · ② (생 략) ③ 국가는 전문성 있는 특수외	제3조(국가의 책무) ① · ② (현 행과 같음) ③ -----

국어 전문인력이 체계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5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
본계획) ① 교육부장관은 특수
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 5년마다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
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 략)

4.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 6. (생 략)

<신 설>

7. (생 략)

양성·활용

④ (현행과 같음)

제5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
본계획) ①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
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
육감”이라 한다)-----

② -----

1. ~ 3. (현행과 같음)

4. -----양성
· 활용-----

5. · 6. (현행과 같음)

7.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하 “학
생”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
는 특수외국어 교육과정의 활
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③ (생 략)

제6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 ①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기초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제8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특수외국어에 관한 전문성과 교육역량을 갖춘 학교를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9조(전문교육기관의 업무) ① 전문교육기관은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4. (생 략)

<신 설>

③ (현행과 같음)

제6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8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전문교육기관의 업무) ① -----

-----.

1. ~ 4. (현행과 같음)

5.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다문화학생

5. (생략)

② (생략)

<신설>

등의 원활한 교육을 위한 특수외국어 통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의2(특수외국어 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생의 특수외국어 교육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교육기관 등에 특수외국어 교육센터(이하 이 조에서 “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육부장관 및 전문교육기관과 협력하여 교육센터에 특수외국어 교육에 전문성을 갖추고 지도·운영을 전담할 수 있는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교육센터의 설치·

운영,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의
배치·운용, 행정적·재정적 지
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